#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7306 제안연월일: 2025. 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번 호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31	곽규택	'24.08.26.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4.11.13.)
		의원 등 10인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43	김기표	'23.08.3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4.11.13.)
		의원 등 11인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4.12.3.)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2. 2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 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법률 제 호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2항 중 "신고·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 의무"를 "신고·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로, "제62조제1항·제4항및 제5항"을 "제62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를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부분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한다"로 한다.

제62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다.

제74조제11호 중 "제62조제7항"을 "제62조제9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 구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① 에 대한 준용규정) ① ~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 • 비치 -----신고·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에 관하여는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제62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을 준용한다. -----제62조제1항·제4항 ·제5항·제7항 및 제8항-----① · ①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 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 력적 피해임을 <u>증명하는 경우</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6. (생략)
- ② ~ ⑦ (생 략)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 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 준을 고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⑨ ~ ⑫ (생 략)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저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_
	_
증명하고, 제	8
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년	<u></u>
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	ユ
러하지 아니하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8	· <b>-</b>
	-
	-
	· <b>–</b>
	-
	-
<u>고시한다</u> .	
1. ~ 3.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세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이	게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학	<u>한</u>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u>=</u>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이	게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점	건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⑦ (생략)

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제6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공개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74조(청문)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2조제9항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74조(청문)	공개하여야 한다.
	<u>⑨</u> (현행 제7항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62조제9항</u>	제74조(청문)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62조제9항</u>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62조제9항</u>	
11. <u>제62조제9항</u>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62조제9항